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12월 8일, 이재석 의원 등 99명
상정일자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2월 22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개정내용	○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일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12월 8일, 이재석 의원 등 99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12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 2월 22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재석 의원)

가. 제정이유

-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을 통한 소외 지역 주민복리 도모라는 조례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복승규)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주민지원)에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과 별도로 도의 재정지원을 투입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 제4조제1호의 주민소득증대 사업·제3호의 도로 상하수도 노후주택개선 사업, 제4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비 등은 이미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한 사업임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였음
- 따라서 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상의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16조의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범위 및 재정지원 등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전문위원실(대표발의 이재석 의원 소속 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1분은 부정적· 3분은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이는 지원조례 제정여부를 검토한 것으로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표 참고)
-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에서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원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여부 관련 법률자문결과

구분	제정 여부	검토의견
A	부적합	○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주민지원사업 규정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려움
B	가능함	○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자치사무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함
C	가능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로 자체 재원 사업을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도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배하지 않음
D	가능함	○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위임사무이며,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범위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규정할 수 있음 - 조례안 제4조 중 “법 제16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를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7조가 위임하는 범위에서”로 하여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별첨 1]

8. 첨부서류

- 조례안(수정안 포함) ----- [별첨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4월 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가. 수정이유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u>제4조(주민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공동사업장, 체험마을, 특산물 개발 및 생산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u> <u>2. 폐기물, 환경정화 등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u> <u>3. 도로, 상하수도, 노후주택 개선 등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u> <u>4.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비 등 지원 사업</u> <u>5.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4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 <u>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u>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소외 지역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